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1421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희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12.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5,264,67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264,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662734호로 소외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C)은 원고(D 주식회사)에게 11,835,411원과 그 중 11,333,334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은 E유한회사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023. 7. 19. 현재 위 양수금은 원금 11,333,334원, 양수전 이자 502,077원, 양수후 이자 23,429,261원을 합한 35,264,672원에 이른다.

나.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9. 24. 사망하였다.

다. 피고, G,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망인의 배우자 H은 망인보다 앞선 2006. 3. 8. 사망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망인이 1994. 7. 18.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데, 망인의 사후 피고와 G, C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10. 접수 제132101호로 2020.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주택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주택 중 3분의 1 지분 외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31. 접수 제40886호로 채권최고액을 100,87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의 2022년 10월경부터 2022년 12월경 기준 시가는 14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C이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다만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또는 성립범위를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사실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원고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년 12월경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14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택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위 140,000,000원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주택 중 공동담보가액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 1/3 지분의 가액은 46,666,666원($= 140,000,000\text{원} \times 1/3$, 원 미만 버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구하는 앞서 본 위 양수금채권액이 35,264,672원으로 위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은 35,264,672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35,264,672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35,264,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방혜미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지층 60.09㎡, 1층 110.10㎡, 2층 내지 4층 각 109.0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대 297.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49.4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97.6분의 37.11

